남원시
NAMWON CITY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시 보

www.namwon.go.kr

선람	기관의 장

제53호 2019. 12. 27(금)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2019-158호 2020년도 건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1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19-2227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 ---------- 27

회람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4

남원시 고시 제 2019 - 158 호

2020년도 건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20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건축물, 선박,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등』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2월 27일

남 원 시 장

- 다 음 -

1. 2020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기준

2.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따로붙임

(세부내용은 남원시 홈페이지 및 시(읍·면·동) 민원실에 비치)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3호 시 보 2019. 12. 27(금)

- 2020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

시가표준액 승인

남 원 시

(재 정 과)

목 차

Ⅰ. 개요 ····· 1

Ⅱ. 세부 조정 내용 ····· 3

1. 건축물 ····· 3

1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조정 ····· 3

2 각종 지수 조정 ····· 4

2. 기타물건 ····· 5

1 가격 조사 ····· 5

2 시가조사 결과 ····· 6

3 조정 내용 ····· 7

(붙임) '20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신구대비표 ····· 11

'20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Ⅰ 개 요

□ 시가표준액 개요

○ 취득세, 재산세 등 각 세목에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가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조정기준**에 따라 지자체 장이 매년 1월 1일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4조)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 **(건축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각종지수, 경과연수 및 가감산 특례를 감안하여 산정

건축물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	각종지수 (구조 / 용도 / 위치)	×	경과연수 잔 가 율	×	가감산 특 례

○ **(기타물건)**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를 고려하여 산정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경과연수별 잔가율

※ 토지 및 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가격을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사용

□ 「'20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주요내용

〈 기본 방향 〉

- ▸ (건 축 물)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및 각종 지수를 조정하고, 대형건축물 가산율**을 **신설**하되, 국민 세부담을 고려하여 결정
- ▸ (기 타 물 건) 물가상승, 시가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율을 제고**하되, 세부담 급등 방지를 위해 잔가율, 내용연수 등을 단계적·연차적으로 현실화

➡ **합리적인 시가표준액 마련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과세 행정 구현**

1 건축물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2만원 인상**('19년 71만원/㎡→'20년 73만원/㎡)

- 행안부와 국세청 협의 후 국세청장이 고시

○ **(건축물 현실화율 제고) 고가·대형건축물***의 현실화율이 낮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위치지수 상위구간 세분화**, 면적에 따른 5% 가산율 신설

* 1동의 연면적이 6만㎡ 이상이면서 지상층수 16층 이상인 건물

** 최상위구간 공시지가 ㎡당 5천만원 초과 구간을 8천만원까지 1천만원 단위로 3개 구간 추가하여 세분화(28단계→31단계)

○ **(지수조정)** 현실화율과 물건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수 소폭 조정

※ ┌(구조) 보강콘크리트조·보강블록조(90→95)
└(용도) 냉동·냉장창고(80→90), 전업농어가주택(75→80), 주차장(76→74) 등

2 기타물건

○ **(조정기준 신설)** 시가표준액 기준이 없어 저평가 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구형 저유조 시설에 대한 조정기준 신설

○ **(잔가율·내용연수 개선)** 실제가치와 괴리가 큰 물건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차량·기계장비의 잔가율 조정, 선박·항공기의 내용연수 연장

○ **(기준가격)** 제조원가·운임이 상승된 선박(6.25%), 시설물(2.98%) 기준가격 인상 ※ 차량 소폭 상승(0.05%↑), 기계장비 소폭 하락(0.14%↓)

○ 신규 출시물건, 기존 누락물건 등에 대한 기준가격 추가(7,016종)

※ ('19년) 89,267종 → ('20년) 95,676종 (7.2%↑)

Ⅱ 세부 조정 내용

1. 건축물

1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조정

○ (의의) 매년 1월 1일 국세청장이 건설비, 자재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주택을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시 기준금액

○ 그간 변동 현황

- '17년 67만원(1.5%↑) → '18년 69만원(3.0%↑) → '19년 71만원(2.9%↑)

(단위 : 원/㎡, %)

연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증가액	상승률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2011	580,000	-	-	-
2012	610,000	30,000	5.2	-
2013	620,000	10,000	1.6	-
2014	640,000	20,000	3.2	60.8
2015	650,000	10,000	1.6	64.2
2016	660,000	10,000	1.5	74.7
2017	670,000	10,000	1.5	58.9
2018	690,000	20,000	3.0	59.4
2019	710,000	20,000	2.9	60.0

*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 시가표준액/철근콘크리트조 신축건물의 법인신고가액

○ 국세청 협의 결과

- 경제여건,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완만한 세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19년 대비 2만원 상승한 **73만원/㎡**으로 협의

신축가격기준액	73만원(1안)	72만원(2안)
재산세 증감액 추계	약 102억 증가	약 131억 감소

2 각종 지수 조정

1) 구조지수

○ 보강콘크리트조와 보강블록조를 시멘트벽돌조와 분리하여 지수 상향 (90 → 95)

- 보강콘크리트조는 시멘트벽돌조의 결함을 보완한 구조이고, 보강블록조는 블록조의 결함을 보완한 구조인데,
- 구조지수는 시멘트벽돌조와 동일(90)하여 높은 신고가액을 반영하여 차등화

2) 용도지수

○ **(지수조정)** 연차별 용도지수 개선계획,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분석 결과, 물건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수 조정

- (상향) 용도의 특수성,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냉동·냉장창고(80 → 90), 발전시설(110 → 120) 등의 지수를 상향 조정
- (하향) 물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차장(76 → 74), 유흥주점(135 → 130), 단란주점(130 → 127)의 지수를 하향 조정

○ **(적용요령 정비)** 지자체 의견 등을 토대로 전업농어가주택 창고의 용도지수 적용요령 신설

- 농·어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기계·물품 등의 보관용 창고를 짓는 경우에도 전업농어가주택 창고 지수를 적용

3) 위치지수

○ 고가건축물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위치지수 상위구간 세분화 및 차등성 강화

- 최상위구간 건물부속토지가격 ㎡당 5천만원 초과 구간을 세분화하여 8천만원까지 1천만원 단위로 3개 구간 추가(28단계→31단계)
- 최상위 위치지수를 160에서 169까지 3포인트 간격으로 상향

4) 가감산특례

○ 대형건축물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가산율(5%) 신설

- 대형건축물은 견고한 기초설계, 특수한 건축재료 사용, 부대시설 등으로 인해 신축단가가 상승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시가표준액이 저가 산정되는 문제

- 건축물 규모(1동의 연면적이 6만㎡ 이상이면서 지상층수 16층 이상)에 따른 가산율(5%)을 가감산특례에 반영

2. 기타물건

1 가격 조사

○ **(조사대상)**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시설물 등 총 **95,676종***

* '18년 89,267종 대비 6,409종(7.2%↑) 증가

구 분 / 물건별	종수	구 분 / 물건별	종수
계	95,676	시설물(부수시설물)	5,763(2,354)
차량	72,487	입목	97
기계장비	12,753	어업권	235
선박	140	회원권	3,615
항공기	244	지하자원	342

○ **(기준가격 변동)** 전년 대비 전체변동률은 1.49%이고, 물건별로는 선박(6.25%), 시설물(2.98%), 어업권(2.27%) 순으로 상승

- 반면, 기계장비(-0.14%)의 경우 소폭 하락

○ 기준가격 변동으로 총 56억원의 세수 증대 예측

- 취득세 32억, 재산세 20억, 지역자원시설세 4억

2 시가조사 결과

○ **(기본방향)** 조사가격 반영율 격차에 따른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문제를 방지하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연차적 조정 실시

- **조사가격 반영율이 100%인** 차량, 기계장비, 회원권, 지하자원은 **조사결과를 그대로 적용**

- **조사가격 반영율이 80% 미만**인 물건에 대해서는 연차적 상향조정하되, 입목, 어업권 등 농·어업인의 **생계와 관련된 물건은 조사가격 반영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

○ 가격 및 조사가격 반영율 변동 현황

구분	'19년 조사가격 반영율*	'19년 조사가격 변동율	'20년 기준가격 변동율	'20년 조사가격 반영율**
차 량	100%	0.05%↑	0.05%↑	100%
기계장비	100%	-0.14%↓	-0.14%↓	100%
선 박	76%	4.17%↑	6.25%↑	77%
항공기	81%	0.09%↑	0.07%↑	81%
시설물	83%	2.79%↑	2.98%↑	83%
부수시설물	79%	0.61%↑	0.85%↑	79%
입 목	74%	-0.78%↓	1.64%↑	76%
어업권	70%	2.27%↑	2.27%↑	70%
회원권	100%	0.14%↑	0.14%↑	100%
지하자원	100%	0.75%↑	0.75%↑	100%

* '19년 조사가격반영율 = '19년 기준가격 / '18년 조사가격

** '20년 조사가격반영율 = '20년 기준가격 / '19년 조사가격

3 조정 내용

1)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 · 화물자동차 잔가율 현실화

○ **(현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승합·화물자동차의 잔가율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비영업용 국산 승용차는 초기 잔가율이 낮고, 외산 승용차는 경과연수가 오래된 차량의 잔가율이 높은 수준
- 비영업용 승합차(7년 이상)와 화물차(5~13년)의 추정 잔가율이 현행 잔가율을 각각 10%와 40%이상 상회

○ **(개선)** 비영업용 승용 및 승합·화물자동차 잔가율 조정

- (승용) 국산·외산 경과연수 1년 미만 차량의 잔가율 상향 조정, 외산 경과연수 13~14년은 잔가율 소폭 하향 조정
- (승합) 비영업용은 경과연수 8년부터, 영업용은 전반적으로 잔가율 상향 조정
- (화물) 비영업용은 경과연수 1년 이하는 잔가율 하향 조정하고 경과연수 7년 이상은 상향 조정, 영업용은 경과연수 2년 이후 잔가율 상향 조정

□ 비영업용 차량 용도변경 시 잔가율 적용요령 개선

○ **(현행)** 차량 용도변경 시 이전 용도에 대한 잔가율을 적용하나, 1차 변경 취득에만 적용되므로 동일한 차량을 제3자가 재취득 시 1차 변경 취득자보다 높은 잔가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민원 발생

- 예컨대, A가 영업용 중고차량을 취득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 후 B에게 양도한 경우 B는 비영업용 잔가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 비영업용 잔가율은 영업용 잔가율에 비해 내용연수가 길고, 감가율이 작아서 B는 A보다 높은 잔가율을 적용 받음

○ **(개선)** 차량 용도변경 시 각각의 용도로 사용된 연수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도록 함

- (예시) A가 출고 3년이 지난 영업용 차량을 취득하여 2년 간 비영업용으로 사용 후 B에게 양도한 경우 B에 대하여 적용되는 잔가율

$$
\begin{aligned}
B\text{의 잔가율} &= 0.178(\text{영업용, 경과연수} = 3\text{년}) \\
&\times (1-0.156)(\text{경과연수}4\text{년 비영업용 감가상각률}) \\
&\times (1-0.158)(\text{경과연수}5\text{년 비영업용 감가상각률}) \\
&= 0.126
\end{aligned}
$$

※ 경과연수 t의 감가상각률 $= (\text{잔가율}_t - \text{잔가율}_{t-1})/\text{잔가율}_{t-1}$

2) 기계장비

□ 잔가율 현실화

○ **(현행)** 경과연수가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기계장비의 비중은 그룹I 22.5%, 그룹II 16%, 그룹III 27.5%인 것으로 나타남

< 기계장비 그룹별 내용연수 초과비중 >

■ (그룹I) 콘크리트피니셔, 노면파쇄기, 도로보수트럭 등 초과 비중은 40%
■ (그룹II) 아스팔트피니셔의 초과 비중은 35.1%
■ (그룹III) 모터그레이더, 항타 및 항발기, 준설선 등 초과비중은 40%

○ **(개선)** 전반적으로 경과연수 3년 이상 장비*의 잔가율을 5~6% 상향 조정

* 그룹I은 경과연수 3년 이상, 그룹II와 그룹III은 경과연수 4년 이상

3) 선박

□ 잔존율 차등화

○ **(현행)** 강선-일반화물선은 내용연수가 20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가액 대비 시가표준액 비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

○ **(개선)** 강선-일반화물선의 잔존율을 1%p 상향 조정

□ 내용연수 연장

○ **(현행)** 상당 비중의 선박(목선-어선의 99%, 강선의 70%)이 내용연수 경과

○ **(개선)** 목선-어선의 내용연수를 3년 연장하고, 강선-부선, 강선-예인선, 강선-어선, 강선-기타선, 합성수지선-요트의 내용연수를 2년씩 연장

□ 톤수 단계 세분화

○ **(현행)** 일반화물선-유조선은 500톤 이하 구간이 '200톤 이하'와 '201~500톤' 구간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유사 선종인 강선-특수화물선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

○ **(개선)** 강선-특수화물선의 500톤 이하 구간을 '200톤 이하'와 '201~500톤'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추가되는 최하위 구간의 톤당 기준가격은 기존보다 높게 조정

□ 분류체계 명확화

○ **(현행)** 기타선-보트는 고무보트를 위한 분류항목인데, 고가의 선박도 보트로 분류되어 낮은 가격을 적용받는 문제

○ **(개선)** '기타선-보트'를 '기타선-고무보트'로 변경

□ 톤수가 0인 선박(수상레저기구)의 톤수 산정

○ **(현행)** 소형 수상레저기구의 톤수가 안전검사증에 0으로 기재된 경우 선박 과세자료에도 0톤으로 기록되어 시가표준액이 0원이 되므로, 재산세 부과에 어려움이 있고 취득세 부과 시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이 됨

※ 재산세 과세자료에서 톤수가 0인 선박은 142건으로, 전체 선박수의 0.19%를 차지

○ **(개선)** 톤수가 0톤인 선박과 0톤 이상 1톤 미만 고무보트의 톤수는 1톤으로 산정

□ 적용요령 문구 명확화

○ 선박의 선령계산 적용요령의 표현을 명확히 하고, 유조선의 범위에서 LNG운반선(강선-화물선에서 별도 규정)은 제외

4) 항공기

□ 내용연수 연장

○ **(현행)** 내용연수가 7년(최대이륙중량 1,500kg 이하)인 고정익 항공기의 내용연수 경과비중이 76.2%에 달함

○ **(개선)** 내용연수 7년인 고정익 항공기의 내용연수를 2년 연장(9년)

5) 시설물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내용연수 신설

○ **(현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맥스터, 캐니스터)에 대한 시가표준액 적용기준이 없어 다른 물건(저장조 중 아연도금강판)의 기준을 적용

○ **(개선)** 유사시설(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내용연수 100년, 잔존율 10%)

□ 구형 저유조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신설

○ **(현행)** 신규 LPG 저장시설로서 구형(球形) 저유조가 다수 발견되나, 현행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는 원형과 각형만 존재

○ **(개선)** LPG 저장시설에 구형 저유조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신설

붙임 **'20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신구대비표**

1. 건축물

1) 구조지수 조정

구조번호	구 조 별	현행	개선
5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록조	90	95
6	황토조, ALC조, 시멘트벽돌조	90	90
7	목조	78	78
8	경량철골조, 시멘트블록조, 와이어패널조	60	60
9	조립식패널조, FRP 패널조	50	50
10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40	40
11	컨테이너건물	30	30
12	철파이프조	25	25

2) 용도지수 조정

<용도지수>

구분	용도		번호	대상건물	현행	개선
I	주거용 건물	주거시설	4	◦ 전업농어가주택, 광산주택	75	80
II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숙박시설	9	◦ 일반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을 제외한 그 외의 펜션)	120	123
		위락시설	14	◦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 무도장	135	135
			15	◦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135	130
			16	◦ 단란주점	130	127
III	산업용 및 기타 특수용 건물	발전시설	42	◦ 발전시설(용도번호 41번에 해당되는 것 제외), 변전소	110	120
		창고시설	43	◦ 냉동·냉장창고	80	90
			44	◦ 창고(냉동·냉장창고, 주거용 창고, 사무실용 창고 및 전업농어가 주택창고 제외) ◦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80	80
			45	◦ 전업농어가주택 창고	30	35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현행	개선
	위 험 물 저 장 및 처리시설	46	◦ 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 ◦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판매소, 도시가스제조시설, 화약류저장소, 기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의 캐노피	125	125
	자원순환 관련 시설	47	◦ 하수 등 처리시설 ◦ 고물상 ◦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80	80
	자 동 차 관련시설	48	◦ 주차장	76	74
		49	◦ 주차전용빌딩	65	65
		50	◦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74	74
	동·식물 관련시설	51	◦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 양수장, 경주용마사 ◦ 도축장, 도계장	80	80
		52	◦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 가축시설(퇴비장,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건조장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기타 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 제외)	30	30
	교정 및 군사시설	53	◦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함) ◦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국방·군사시설	100	100

<적용요령>

현 행	개 선
13) (신 설)	13) 전업농어가주택 창고란 전업농어가주택에 부속된 창고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에서 농업인 및 어업인이 농·어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기계·물품 등의 보관용 창고를 포함한다.

3) 위치지수 세분화

현 행

(단위 : 천원/㎡)

지역번호	건물부속토지가격	지수
28	50,000초과	160

개 선

(단위 : 천원/㎡)

지역번호	건물부속토지가격	지수
28	50,000초과 ~ 60,000이하	160
29	60,000초과 ~ 70,000이하	163
30	70,000초과 ~ 80,000이하	166
31	80,000초과	169

4) 가산율 신설

<가산율>

현 행

(신 설)

개 선

구분	가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가산율	가산율 적용제외 부분
Ⅶ	(13) 1동의 연면적이 60,000㎡ 이상이면서 지상층수 16층 이상인 건물	5/100	-

<적용요령>

현 행

8) 가산대상과 감산대상이 여러 구분(Ⅰ~Ⅵ)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가산율 또는 감산율을 더하여 중복으로 적용한다.

(신 설)

9) 위 가감산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 선

8) **가산대상(구분 Ⅰ~Ⅶ)과 감산대상(구분 Ⅰ~Ⅵ)에 이중**으로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가산율 또는 감산율을 더하여 **중복** 적용한다.

9) 가산대상 및 가산율 '구분 Ⅶ' 및 감산대상 및 감산율 '구분 Ⅰ' 적용 시 건물 일부의 취득, 지분 취득, 집합건물 취득 등의 경우, 해당 면적이 아닌 전체 1동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가산율 및 감산율을 적용한다.

10) 위 가감산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기타물건

1)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잔가율

현 행

경과연수	내용연수	1년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승용 국산	15년	0.802	0.725	0.614	0.518	0.437	0.368	0.311	0.262	0.221	0.186	0.157	0.132	0.112	0.094	0.079	0.067
승용 외산	15년	0.817	0.729	0.605	0.500	0.412	0.340	0.281	0.232	0.191	0.158	0.130	0.108	0.089	0.074	0.061	0.050

개 선

경과연수	내용연수	1년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승용 국산	15년	0.826	0.725	0.614	0.518	0.437	0.368	0.311	0.262	0.221	0.186	0.157	0.132	0.112	0.094	0.079	0.067
승용 외산	15년	0.842	0.729	0.605	0.500	0.412	0.340	0.281	0.232	0.191	0.158	0.130	0.108	0.089	0.073	0.060	0.050

□ 승합·화물자동차 잔가율

현 행

구 분		내용연수	1년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비영업용	승합	15년	0.810	0.726	0.609	0.510	0.426	0.357	0.298	0.250	0.209	0.175	0.146	0.122	0.102	0.085	0.072	0.060
	화물	15년	0.778	0.704	0.597	0.510	0.426	0.357	0.298	0.255	0.215	0.182	0.153	0.131	0.110	0.093	0.079	0.067
영업용	승합	6년	0.703	0.562	0.464	0.316	0.215	0.147	0.100									
	화물	6년	0.702	0.561	0.463	0.316	0.219	0.153	0.100									

개 선

구 분		내용연수	1년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비영업용	승합	15년	0.810	0.726	0.609	0.510	0.426	0.357	0.298	0.250	0.215	0.184	0.157	0.134	0.113	0.096	0.081	0.060
	화물	15년	0.761	0.671	0.597	0.510	0.426	0.357	0.298	0.259	0.229	0.200	0.172	0.149	0.128	0.110	0.095	0.067
영업용	승합	6년	0.820	0.644	0.514	0.367	0.262	0.187	0.100									
	화물	6년	0.702	0.561	0.500	0.377	0.280	0.205	0.100									

□ 비영업용 승용차 용도변경 시 잔가율 적용요령

현 행	개 선
마. 영업용에서 비영업용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영업용 잔가율을 적용하고, 비영업용에서 영업용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비영업용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다만,「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매매용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 취득 전 사용용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마. 차량 잔가율 산정시 각각의 용도로 사용된 연수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잔가율을 적용한다.** 다만,「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매매용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 취득 전 사용용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신 설)	**예시) A가 출고 3년이 지난 영업용 차량을 취득하여 2년 간 비영업용으로 사용 후 B에게 양도할 경우 B에 대하여 적용되는 잔가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B의 잔가율 = 0.178(영업용, 경과연수=3년) ×(1-0.156)(경과연수4년 비영업용 감가상각률) ×(1-0.158)(경과연수5년 비영업용 감가상각률) = 0.126

<표> 승용자동차 용도별 감가상각률

경과연수	비영업용(국산)	영업용
0	-0.174	-0.292
1	-0.122	-0.206
2	-0.153	-0.438
3	-0.156	-0.437
4	-0.156	-0.438
5	-0.158	0
6	-0.155	0
7	-0.158	0
8	-0.156	0
9	-0.158	0
10	-0.156	0
11	-0.159	0
12	-0.152	0
13	-0.161	0
14	-0.160	0
15	-0.152	0

<표> 승합 및 화물자동차 용도별 감가상각률

경과연수	승합		화물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0	-0.190	-0.180	-0.239	-0.298
1	-0.104	-0.215	-0.118	-0.201
2	-0.161	-0.202	-0.110	-0.109
3	-0.163	-0.286	-0.146	-0.246
4	-0.165	-0.286	-0.165	-0.257
5	-0.162	-0.286	-0.162	-0.268
6	-0.165	-0.465	-0.165	-0.512
7	-0.161	0	-0.131	0
8	-0.140	0	-0.116	0
9	-0.144	0	-0.127	0
10	-0.147	0	-0.140	0
11	-0.146	0	-0.134	0
12	-0.157	0	-0.141	0
13	-0.150	0	-0.141	0
14	-0.156	0	-0.136	0
15	-0.259	0	-0.295	0

2) 기계장비 잔가율 상향

현 행

경과연수	현행		
	그룹 I	그룹 II	그룹 III
1년 미만	0.802	0.841	0.855
1	0.708	0.768	0.793
2	0.637	0.709	0.736
3	0.514	0.603	0.644
4	0.418	0.517	0.568
5	0.332	0.433	0.487
6	0.276	0.363	0.418
7	0.220	0.303	0.358
8	0.175	0.266	0.308
9	0.139	0.223	0.276
10	0.100	0.187	0.237
11		0.157	0.204
12		0.131	0.174
13		0.100	0.150
14			0.129
15			0.100

개 선

경과연수	개선안		
	그룹 I	그룹 II	그룹 III
1년 미만	0.802	0.841	0.855
1	0.708	0.768	0.793
2	0.637	0.709	0.736
3	**0.545**	0.603	0.644
4	**0.439**	**0.543**	**0.603**
5	**0.349**	**0.455**	**0.511**
6	**0.290**	**0.381**	**0.439**
7	**0.231**	**0.318**	**0.376**
8	**0.184**	**0.279**	**0.323**
9	**0.146**	**0.234**	**0.290**
10	0.100	**0.196**	**0.249**
11		**0.165**	**0.214**
12		**0.138**	**0.183**
13		0.100	**0.158**
14			**0.135**
15			0.100

3) 선박

□ 잔존율 차등화

현 행

2. 내용연수 및 감가율

가. 선체

선 종 별	용 도	내용연수	감가상각법	감가율	잔존율
강선	일반화물선	20년	정률법	0.109	10%

5. 잔가율표

가. 선박 잔가율표(정률법)

연간감가율 / 내용연수 / 경과연수	0.134	0.120	0.109
	16년	18년	20년
1	0.866	0.880	0.891
2	0.750	0.774	0.794
3	0.649	0.681	0.708
4	0.562	0.599	0.631
5	0.487	0.527	0.562
6	0.422	0.464	0.501
7	0.365	0.408	0.447
8	0.316	0.359	0.398
9	0.274	0.316	0.355
10	0.237	0.278	0.316
11	0.205	0.245	0.282
12	0.178	0.216	0.251
13	0.154	0.190	0.224
14	0.133	0.167	0.200
15	0.115	0.147	0.178
16	0.100	0.129	0.158
17		0.114	0.141
18		0.100	0.126
19			0.112
20			0.100

개 선

2. 내용연수 및 감가율

가. 선체

선 종 별	용 도	내용연수	감가상각법	감가율	잔존율
강선	일반화물선	20년	정률법	0.1045	11%

5. 잔가율표

가. 선박 잔가율표(정률법)

연간감가율 / 내용연수 / 경과연수	0.134	0.120	0.109	0.1045
	16년	18년	20년*	20년**
1	0.866	0.880	0.891	0.896
2	0.750	0.774	0.794	0.802
3	0.649	0.681	0.708	0.718
4	0.562	0.599	0.631	0.643
5	0.487	0.527	0.562	0.576
6	0.422	0.464	0.501	0.516
7	0.365	0.408	0.447	0.462
8	0.316	0.359	0.398	0.414
9	0.274	0.316	0.355	0.370
10	0.237	0.278	0.316	0.332
11	0.205	0.245	0.282	0.297
12	0.178	0.216	0.251	0.266
13	0.154	0.190	0.224	0.238
14	0.133	0.167	0.200	0.213
15	0.115	0.147	0.178	0.191
16	0.100	0.129	0.158	0.171
17		0.114	0.141	0.153
18		0.100	0.126	0.137
19			0.112	0.123
20			0.100	0.110

* 잔존율 10% 기준

** 잔존율 11% 기준

□ 내용연수 연장

현 행

2. 내용연수 및 감가율

가. 선체

선 종 별	용 도	내용연수	감가상각법	감가율
강 선	어 선	16년	정률법	0.134
	예 인 선	14년	〃	0.152
	부 선	14년	〃	0.152
	기 타 선	14년	〃	0.152
합성수지선	요 트	12년	〃	0.175
목 선	어 선	8년	정액법	0.1125

5. 잔가율표

나. 선박 잔가율표(정액법)

연간감가율 / 내용연수 / 경과연수	0.1125	0.09	0.075
	8년	10년	12년
1	0.8875	0.91	0.925
2	0.7750	0.82	0.850
3	0.6625	0.73	0.775
4	0.5500	0.64	0.700
5	0.4375	0.55	0.625
6	0.3250	0.46	0.550
7	0.2125	0.37	0.475
8	0.1000	0.28	0.400
9		0.19	0.325
10		0.10	0.250
11			0.175
12			0.100

개 선

2. 내용연수 및 감가율

가. 선체

선 종 별	용 도	내용연수	감가상각법	감가율
강 선	어 선	18년	정률법	0.120
	예 인 선	16년	〃	0.134
	부 선	16년	〃	0.134
	기 타 선	16년	〃	0.134
합성수지선	요 트	14년	〃	0.152
목 선	어 선	11년	정액법	0.0818

5. 잔가율표

나. 선박 잔가율표(정액법)

연간감가율 / 내용연수 / 경과연수	0.1125	0.0818	0.075
	8년	11년	12년
1	0.8875	0.918	0.925
2	0.7750	0.836	0.850
3	0.6625	0.755	0.775
4	0.5500	0.673	0.700
5	0.4375	0.591	0.625
6	0.3250	0.509	0.550
7	0.2125	0.427	0.475
8	0.1000	0.346	0.400
9		0.264	0.325
10		0.182	0.250
11		0.100	0.175
12			0.100

□ 톤수 단계 세분화

현 행

선종	용도	단계	톤당 기준가격 (천원)	최고톤수가격 (천원)
강선	일반화물선	200톤 이하	3,486	697,200
		201 ~ 500	3,404	1,718,400
		501 ~ 1000	2,622	3,029,400
		1001 ~ 3000	1,759	6,547,400
		3001 ~ 10000	1,258	15,353,400
		10001 ~ 20000	860	23,953,400
		20001 ~ 60000	463	42,473,400
		60001톤 이상	412	-
	특수화물선	500톤 이하	2,931	1,465,500
		501 ~ 1000	2,254	2,592,500
		1001 ~ 3000	1,277	5,146,500
		3001 ~ 10000	1,122	13,000,500
		10001 ~ 20000	878	21,780,500
		20001 ~ 60000	438	39,300,500
		60001톤 이상	381	-

개 선

선종	용도	단계	톤당 기준가격 (천원)	최고톤수가격 (천원)
강선	일반화물선	200톤 이하	3,834	766,800
		201 ~ 500	3,574	1,839,000
		501 ~ 1000	2,752	3,215,000
		1001 ~ 3000	1,700	6,615,000
		3001 ~ 10000	1,268	15,491,000
		10001 ~ 20000	903	24,521,000
		20001 ~ 60000	486	43,961,000
		60001톤 이상	412	-
	특수화물선	200톤 이하	3,579	715,800
		201 ~ 500	3,214	1,680,000
		501 ~ 1000	2,498	2,929,000
		1001 ~ 3000	1,400	5,729,000
		3001 ~ 10000	1,217	14,248,000
		10001 ~ 20000	878	23,028,000
		20001 ~ 60000	459	41,388,000
		60001톤 이상	400	-

□ 분류체계 명확화

현 행

선 종 별	용 도
기타선	보 트

개 선

선 종 별	용 도
기타선	고 무 보 트

□ 톤수가 0인 선박(수상레저기구)의 톤수 산정

현 행	개 선
가. 적용요령 2) 10톤 미만 선박의 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하고, 10톤 이상 선박의 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선박의 톤수는 총톤수로 한다) (신 설)	가. 적용요령 2) **톤수가 0톤인 선박의 톤수는 1톤으로 하고, 0톤 초과 10톤 미만 선박의 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하며,** 10톤 이상 선박의 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선박의 톤수는 총톤수로 한다). **3) 0톤 이상 1톤 미만 고무보트의 톤수는 1톤으로 한다.**

□ 적용요령 문구 명확화

현 행	개 선
가. 적용요령 3) 선박의 선령계산 • 선령계산은 진수일로부터 납세의무성립시기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조 후 1년 미만의 선박은 기준가격을 적용하고 선령이 1년 이상인 선박으로서 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가 6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년으로 계산한다. • 선박의 진수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 등록일이 속하는 연도로부터 3년 전을 진수연도로 보고, 진수월일이 불명시는 진수연도 1월 1일을 진수일로 본다. • 내용연수가 초과된 선박은 경과연수 최종연도의 가액으로 한다. (신 설) 4) 유조선에는 화학제품운반선, LPG탱크, 당밀운반선 등 화물을 액체상태로 운반하는 모든 선박을 포함한다. 5) ~ 10) (내용생략)	가. 적용요령 **4)** 선박의 선령계산 **및 경과연수 적용** • 선령계산은 진수일로부터 납세의무성립시기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선령 1년 미만 선박의 경과연수는 0년으로 하고, 선령 1년 이상 선박의 경과연수는 단수 6월 이상을 1년으로 하여 산출한다.** • 선박의 **진수연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선박 최초 등록연도의** 3년 전을 진수연도로 **하고, 진수일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1월 1일을 진수일로 **한다.** **5) 내용연수가 경과한 선박의 잔가율은 잔존율로 한다.** **6)** 유조선에는 화학제품운반선, LPG탱크, 당밀운반선 등 화물을 액체상태로 운반하는 모든 선박을 포함한다**(LNG운반선 제외).** **7)** ~ **12)** (내용생략)

4) 항공기

□ 내용연수 연장

현 행

가. 고정익(활공기, 경량항공기) 항공기의 내용연수표

최대이륙중량	내용연수
5,700㎏초과, 13,650㎏이하	11년
1,500㎏초과, 5,700㎏이하	10년
1,500㎏이하	7년

나. 항공기의 잔가율표:정률법

내용연수 / 경과연수	7년	10년
0	1.000	1.000
1년	0.720	0.794
2년	0.518	0.631
3년	0.373	0.501
4년	0.268	0.398
5년	0.193	0.316
6년	0.139	0.251
7년	0.100	0.200
8년		0.158
9년		0.126
10년		0.100

개 선

가. 고정익(활공기, 경량항공기) 항공기의 내용연수표

최대이륙중량	내용연수
5,700㎏초과, 13,650㎏이하	11년
1,500㎏초과, 5,700㎏이하	10년
1,500㎏이하	**9년**

나. 항공기의 잔가율표:정률법

내용연수 / 경과연수	**7년***	**9년**	10년
0	1.000	**1.000**	1.000
1년	0.720	**0.774**	0.794
2년	0.518	**0.599**	0.631
3년	0.373	**0.464**	0.501
4년	0.268	**0.359**	0.398
5년	0.193	**0.278**	0.316
6년	0.139	**0.215**	0.251
7년	0.100	**0.167**	0.200
8년		**0.129**	0.158
9년		**0.100**	0.126
10년			0.100

*** 내용연수 7년의 회전익 항공기에 적용**

5) 시설물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내용연수 신설

<조정기준>

현 행	개 선
가. 정의 저장조란 곡물, 어류, 과일, 시멘트, 화학제품, 방사성폐기물(중·저준위) 등의 물품을 저장 보관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을 말하며, 다른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나. 종류 1) 철판탱크 ·곡물류 저장용 ·화학제품 등 저장용 (석유화학제품 제외) 2) 철근콘크리트(일반) 3) 철근콘크리트(방사성폐기물) (신 설) 4) 콘크리트 5) 아연도금강판 6) 기타: 1)에서 5)까지 해당되는 것 이외의 저장조	가. 정의 저장조란 곡물, 어류, 과일, 시멘트, 화학제품, **방사성폐기물(고·중·저준위)** 등의 물품을 저장 보관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을 말하며, 다른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나. 종류 1) 철판탱크 ·곡물류 저장용 ·화학제품 등 저장용 (석유화학제품 제외) 2) 철근콘크리트(일반) 3) 철근콘크리트(방사성폐기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저장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직육면체형 맥스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원통형 캐니스터** 4) 콘크리트 5) 아연도금강판 6) 기타: 1)에서 5)까지 해당되는 것 이외의 저장조

<내용연수>

현 행

구 분	내용연수	감가율	감가방법	잔존율
철 판 탱 크	20년	0.045	정액법	10%
철근콘크리트(일반)	40년	0.0225	정액법	10%
철근콘크리트(방사성폐기물)	100년	0.009	정액법	10%
아연도금강판	15년	0.06	정액법	10%

개 선

구 분	내용연수	감가율	감가방법	잔존율
철 판 탱 크	20년	0.045	정액법	10%
철근콘크리트(일반)	40년	0.0225	정액법	10%
철근콘크리트(방사성폐기물)*	100년	0.009	정액법	10%
아연도금강판	15년	0.06	정액법	10%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저장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로서 직육면체형 맥스터와 원통형 캐니스터를 포함한다.**

□ 구형 저유조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신설

<조정기준>

현 행	개 선
나. 종류 1) 소형저유조: 철판탱크(원형, 각형), 철근콘크리트조, 기타, LNG특수저장조, 2) 대형저유조: 철판(원형), 기타, LNG특수저장조, 지하암거 ※ 저유조는 크기, 설비자재, 제작방식에 따라 구분	나. 종류 1) 소형저유조: 철판탱크(원형, 각형, **구형**), 철근콘크리트조, 기타, LNG특수저장조, 2) 대형저유조: 철판(원형, **구형**), 기타, LNG특수저장조, 지하암거 ※ 저유조는 크기, 설비자재, 제작방식에 따라 구분
-정육면체: 가로 × 세로 × 6 -직육면체: (a면의 가로 × 세로 + b면의 가로 × 세로 + c면의 가로 × 세로) × 2 -원통형: ($\pi r^2 \times 2$) + ($2\pi r \times$높이) -타원형: ($\pi ab \times 2$) + $\pi\{5(a+b)/4 - ab/(a+b)\} \times$높이 ※a: 짧은쪽 반지름, b: 긴쪽 반지름 (신 설)	-정육면체: 가로 × 세로 × 6 -직육면체: (a면의 가로 × 세로 + b면의 가로 × 세로 + c면의 가로 × 세로) × 2 -원통형: ($\pi r^2 \times 2$) + ($2\pi r \times$높이) -타원형: ($\pi ab \times 2$) + $\pi\{5(a+b)/4 - ab/(a+b)\} \times$높이 ※a: 짧은쪽 반지름, b: 긴쪽 반지름 **- 구형: $4\pi r^2$**

<기준가격>

현 행

① 소형 저유조: 1,000 배럴 미만

시설	기준가격(천원)	
	50㎥ 기준	1㎥ 증감시
철판탱크 (원형)	19,300	224
철판탱크 (각형)	20,130	248

② 대형 저유조: 1,000 배럴 이상

시설	용량(기준)	기준가격	기준용량 이상배럴당 증감액
철판 (원형)	1,000배럴	54,590	30
	6,000배럴	214,240	20
	60,000배럴	1,326,640	20
	100,000배럴	2,142,400	15
	200,000배럴	3,675,040	13

개 선

① 소형 저유조: 1,000 배럴 미만

시설	기준가격(천원)	
	50㎥ 기준	1㎥ 증감시
철판탱크 (원형)	**19,780**	224
철판탱크 (각형)	**20,630**	248
철판탱크 (구형)	**28,000**	**340**

② 대형 저유조: 1,000 배럴 이상

시설	용량(기준)	기준가격(천원)	기준용량 이상배럴당 증감액
철판 (원형)	1,000배럴	**55,960**	**32**
	6,000배럴	**215,950**	**21**
	60,000배럴	**1,350,000**	**21**
	100,000배럴	**2,190,000**	15
	200,000배럴	**3,690,000**	13
철판 (구형)	**1,000배럴**	**65,000**	**50**
	5,000배럴	**265,000**	**47**
	10,000배럴	**500,000**	**43**
	50,000배럴	**2,220,000**	**40**

남원시 공고 - 제2019-2227호

농업진흥지역 변경 · 해제 계획(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

2019년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에 대해 「농지법」 제31조의2(주민의견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주민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해당 토지 소유자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2. 30.

남 원 시 장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가.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일원

나. 목 적 : 2019년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다. 근 거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4654(2019. 10. 1.)호

라. 변경·해제 내역

○ 변경 : 농업진흥구역 6.2ha → 농업보호구역 6.2ha

○ 해제 : 농업진흥구역 11.1ha, 농업보호구역 13.2ha → 농업진흥지역밖 24.3ha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9. 12. 30. ~ 2020. 1. 13.(14일간)

나. 열람장소 : 남원시청 농정과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필지조서 및 정비 도면은 열람 장소와 남원시청 홈페이지 www.namwon.go.kr (고시/공고)]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열람기간 내

나.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우편가능)

다. 의견제출처 : 남원시청 농정과(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농정과)
(전화: 063-620-6373)

4. 기타사항

가. 변경·해제 대상 농지에 대한 개별 통지는 소유자의 광범위함으로 인하여 해당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은 최종 결정고시가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위 변경·해제 대상 중 향후 금번 변경 및 해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으로 확인될 경우 최종 변경 및 해제 고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 견 제 출 서

의견제출인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휴대폰)
의견제출 내용	**건 명 : 농업진흥지역 변경 · 해제 계획(안)**		
	토지	위 치 :	
		면 적 : ㎡	
	의 견		
	기 타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인적사항은 현 주민열람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추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